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1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4월 25일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청소년시설 감면시설 대상 사용료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설대관 사용료 감면 규정인 안 제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으로 신설함(안 제8조 관련).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”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8조(사용료 등) ① <생략></p> <p>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>③ ~ ⑥ <생략></p>	<p>제8조(사용료 등) 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<현행과 같음></p> <p>7. <u>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: 50%</u></p> <p>③ ~ ⑥ <현행과 같음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8조(사용료 등) ① <개정안과 같음></p> <p>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③ ~ ⑥ <개정안과 같음></p> <p>⑦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사용료 등) ① <생략> ② ~ ⑥ <생략>	제8조(사용료 등) ① <생략> ② ~ ⑥ <생략>
<u><신설></u>	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<u>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</u>